



#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변화 방향

황현아 연구위원

-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4월 18일 공포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법의 입증책임 전환은 종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오던 법리를 법에 명문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소송에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종래 판례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여왔음
  - 이는 제조물이 대부분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개정법은 이와 같은 판례 법리를 명문으로 도입함
- 개정법은 불법행위 억제력 제고 및 피해 보상의 실질화를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액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 개정법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재량으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중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배상액에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개정법이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상한으로 정한 것은 불법행위 억제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충분치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
-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책임소송의 빈도 및 심도(배상액)가 커지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제조업자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i) 위험성이 큰 제조물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부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및 (ii)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 보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1. 검토배경



■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배상책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법률 제14764호)<sup>1)</sup>이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18일 공포됨

- 옥시 사건, 자동차 급발진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피해자 구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
- 20대 국회에서도 총 1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관련 법안들을 검토한 후 (i) 입증책임 전환 및 (ii) 징벌적 배상책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여 본회의 통과됨
- 개정법은 공포(2017년 4월 18일)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되므로,<sup>2)</sup> 2018년 4월 19일 이후 공급되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됨

■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책임소송의 확대 및 배상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보상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불법행위 억제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및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제도의 선의성에 비추어 볼 때,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임
- 본고에서는 개정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법 개정에 따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함

1) 이하 ‘개정법’ 또는 ‘개정 「제조물 책임법」’이라 함

2) 개정법 부칙 제1조

## 2. 개정법의 내용 및 취지



### 가. 입증책임의 전환

- 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i) 결함의 존재, (ii) 손해의 발생 및 (iii)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함<sup>3)</sup>
- 개정법은, (i)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ii)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 및 (iii)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음<sup>4)</sup>
  - 과학기술의 고도화 및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왔음
  - 이러한 고려에서 종전에 대법원도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왔음<sup>5)</sup>

3)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4) 개정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 4. 18.]

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외 다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의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

- 개정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법 규정에 명문으로 도입함으로써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 다만 단서조항에서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 종전 「제조물 책임법」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및 피해자 보상 현실화를 위해 배상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 현대사회에서는 가해행위가 영리추구를 위한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고 기업 등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이나 형사처벌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sup>6)</sup>
-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비용을 비교하여 전자보다 후자의 비용이 더 낮을 경우 의도적으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충분치 않다는 점도 지적됨<sup>7)</sup>
- 이에 개정법은 (i)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ii)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

- 개정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에 대해서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의 3배 범위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sup>8)</sup>

- 징벌적 배상책임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악의)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6) 이점인(2017),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74호, p. 44

7) 정무위원회(2017. 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 3(우리의 손해배상제도가 ‘일반의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위 입장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됨)

8) 개정법 제3조 제2항

- 개정법상 징벌적 배상책임 요건으로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 요구됨에 따라, 제조업자가 부주의로 결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함
  -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민사소송절차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아니함
  -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고소·고발을 병행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조업자의 결함에 대한 인식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이를 민사재판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입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sup>9)</sup>
- ‘손해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정한 것이 불법행위 억제력을 갖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개별법 규정들은 모두 그 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로 정하고 있어<sup>10)</sup> 개정법도 이와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과 같이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형태에서는 손해액을 3배로 하더라도 불법행위 억제 기능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sup>11)</sup>

### 3. 제조물 책임에 대비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활용의 필요성

-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영향으로 제조물 책임소송이 증가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제조물 책임소송은 입증 곤란으로 인한 낮은 승소가능성, 낮은 배상금액 등으로 인해 소송 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음
    -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sup>12)</sup> 16건의 대법원 판례와 18건의 하급심 판례

9)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거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이점인, 전개논문, p. 75)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11) 이점인, 전개논문, p. 73; 위 논문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위 정보유출로 홈플러스가 얻은 이익은 232억 원인 반면, 홈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4억 35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총 3억 2000만 원)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의 3배 이내로 상한을 정한 뒤 이마저도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3배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 억제기능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음

12)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2002년 이전에도 제조물의 하자과 관련된 소송이 존재하였고, 이 당시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과 책임의 근거가 됨

를 조사한 결과, 총 34건의 판결 중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은 21건임<sup>13)</sup>

- 위 선고 결과 자체만 보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담배소송 사건,<sup>14)</sup> 자동차 급발진 사건,<sup>15)</sup> 석면소송 사건<sup>16)</sup>에서 잇달아 제조업자 측의 책임이 부정되면서, 제조물 책임소송은 피해자인 소비자 측의 승소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

- 이번 개정법은 입증책임 관련 기존 판례의 법리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함께 도입됨에 따라 피해 소비자의 적극적 권리구제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전체적으로 소송 제기 건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인용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징벌적 배상 책임으로 인해 인용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 제조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제조물 책임을 강화하더라도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출시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 책임 발생 시 기업의 배상 자력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sup>17)</sup>

#### ■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부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조물 책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배상자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13) 박동진(2012), 『제조물 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p. 259, p. 260 별첨 2 제조물 책임 관련 판결례 정리

1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나67465 판결(2011. 5. 7. 확정됨)

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2002년 「제조물 책임법」 제정 당시 39,712백만 원에서 2011년 110,984백만 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나(최창희·정인영(2015),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보험연구원, p. 33 참조),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최창희·이규성·한성원(2016, 12),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 『KiRi 리포트』, p. 1)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sup>18)</sup>

- 다만 일괄적인 의무보험화는 계약자유원칙에 반하고, 제품의 위험도·특성·손해발생 개연성이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 보험가입 강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sup>19)</sup> 위험성이 큰 제조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의무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i) 안전마크제품 우선적 의무화 방안, (ii) 농림수산업, 광업, 식료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정밀기계제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의무화 방안, (iii) 위험성이 크고 사고발생률과 배상액 규모가 큰 제품을 실증적으로 선별하여 의무보험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sup>20)</sup>

#### 4.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 가능성의 문제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법행위 억제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지 기능이 상호 충돌하는 쟁점임

- 법무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불법행위 억제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오로지 불법행위 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개정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피해자 보호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sup>21)</sup>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은 불법행위 억제라는 목적에는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18) 황현영(2013),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 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 20(2), 한국비교사법학회, p.359

19) 황현영, 전계논문, p. 359

20) 황현영, 전계논문, p. 359

21) 참고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우리나라 개정 「제조물 책임법」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요건, 내용 및 배상액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예컨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주(州)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i)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전보 배상(Compensatory Damages)과는 별개로 책정되고, (ii) (피해자 보호가 아닌) 불법행위 억제가 주된 기능이며, (iii) 그 요건도 당해 행위가 매우 이례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일 것을 요하고, (iv) 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 없음. 반면,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i) 피해자의 실제 손해에 대한 전보 배상을 포함하고, (ii) 기존의 손해배상으로는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배상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이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 보호가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iii) (악의적이거나 이례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결함에 대한 인식과 미조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iv)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상한으로 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이 책임보험으로 담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오랜 찬반 논의가 있어왔음<sup>22)</sup>

- 부정하는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보상할 경우 불법행위 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점 및 주로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은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의 원리에 반하고 도덕적 위험의 발생이 증가된다는 점을 근거로 함
- 긍정하는 입장은,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보상범위에 포함할 경우에는 담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보상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 억제력이나 재발 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다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과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자 면책은 별개라는 점을 근거로 함
  -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우연성을 갖추고 보험의 요소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담보 대상이 되고, 고의적 사고 등 보험의 원리로 보아 면책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보험 보상이 부정된다고 보는 입장임<sup>23)</sup>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상이한 입장임
  - 뉴욕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을 전면 금지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직접적 배상책임(directive assessed punitive damages)<sup>24)</sup>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금지하나 대표자책임(vicariously assessed punitive damages)<sup>25)</sup>의 경우에는 보험 보상을 허용하며, 델라웨어주는 직접적 배상책임 및 대표자책임의 경우 모두 징벌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보상을 허용함<sup>26)</sup>

■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현행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상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됨<sup>27)</sup>

-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 허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학계 및 실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 보상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sup>28)</sup>

22)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두 논문의 내용을 참고함; 김재형·김세권(2015. 4), 「고의사고 면책 원칙의 완화와 징벌적 배상의 보험담보」, 『법학연구』, 26(1),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 307~309; 장덕조(2003), 「징벌적 손해배상의 보험보호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 『상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p. 273 이하

23) 장덕조, 전제논문, p. 281

24)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징벌적 배상책임

25)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책임 등 그 지위에 의해 부과되는 징벌적 배상책임

26) <http://www.insuranceqna.com/liability-insurance/insurability-of-punitive-exemplary-damages-by-state.html> (2017. 5. 15. 방문)

27)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10호(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28) 전용식·채원영(2016),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정원석(2014),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란」,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김재형·김세권, 전제논문

- 최근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가중 위자료 규정이 도입된 바, 해당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무면허·음주운전 억제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sup>29)</sup>

■ 개정법상 징벌적 배상책임의 요건(결함에 대한 인식 및 미조치)과 목적(불법행위 억제 및 피해자 보호)을 고려해 볼 때 징벌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보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 보상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개정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함<sup>30)</sup>
  -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을 허용하되, 그 보험사고, 즉 제조물로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이 제조업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 특히 개정법상 징벌적 배상책임은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액이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충분치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을 허용할 필요성이 높아 보임
- 이러한 개정법상 피해자 보호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개정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그것이 고의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시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되 다만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31)</sup> 이러한 내용을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도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장덕조, 전개논문

29) 전용식·채원영, 전개 보고서, p. 14

30)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음주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교통사고 자체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자가 결함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가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움. 미국에서도 고의적 행위와 고의적 침해를 구분하여, 행위는 고의적이었다 하더라도 손해가 우연적인 것이라면 보상을 긍정한 경우가 있음(장덕조, 전개 논문, p. 291)

3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5. 결론



-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실적·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내지 부분적 의무화가 수반되어야 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출시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부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및 그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 한편, 징벌적 배상책임에 대해서까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징벌적 배상책임의 도입 취지가 배상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고의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보상을 허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kiri**